

의안번호	2216169
의 퇴 인	박홍배 의원
회 답 일	2026.5.6.
추 계 번호	26B0285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억 5,500만원, 2031년 2억 5,5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2억 7,700만원(연평균 2억 5,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19조)	33	33	33	33	33	167	33
실태조사(안 제20조)	140	140	140	140	140	700	140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 (안 제21조)	16	16	16	16	16	80	16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안 제24조제1항)	66	66	66	66	66	330	66
추가재정소요	255	255	255	255	255	1,277	255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 및 규정에 따라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 및 증진 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	안 제8조(인격적 대우 및 휴식권 의 보장)	누구든지 일하는 사람에게 직장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 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불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됨(제1항)	의무규정
		일하는 사람은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폭행, 괴롭힘 등 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짐. 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함(제 2항)	의무규정
		일하는 사람은 업무시간 외에 전화, 문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업무지시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가짐(제3항)	의무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괴롭힘을 예방하고 피 해를 입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 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하여 상 담·협의·조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3	안 제9조(안전과 건강의 보호)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이 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정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 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일하는 사 람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 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하는 사람이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3조(분쟁 조정 신청)	사업자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일하는 사람은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위반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당사자는 분쟁조정의 신청, 진행 또는 결과에 관계없이 법 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제25조에 따른 조정조서 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제3항)	재량·의무규정
5	안 제14조(사회 보험 등)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해야 함(제1항)	의무규정
		사업자는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해 야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6	안 제19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일하는 사람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제1항)	의무규정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함(제2항) 1.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2.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일하는 사람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그 밖에 지원계획의 수립,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7	안 제20조(실태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현황,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분야로서 일하는 사람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실태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8	안 제21조(일하 는 사람 정책심 의위원회)	일하는 사람의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일하는 사람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복지 증진)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일하는 사람의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 지원 2. 일하는 사람의 생계비 자금 대출 등 생활 안정 지원 3. 일하는 사람의 질병·부상에 따른 생활비 및 상병수당 등 지원 4. 일하는 사람의 사회보험 가입 확산 및 노후준비 지원 5. 일하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주, 일하는 사람 간 상생협력 지원 6. 일하는 사람의 직무능력 개발에 필요한 훈련과정 개설 및 훈련비 지원 7.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0	안 제23조(권익 보호)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1. 일하는 사람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2. 일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 재해 예방 지원 3. 일하는 사람 등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체계 구축 지원 4. 일하는 사람의 출산·육아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1	안 제24조(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국가는 노무제공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제2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 관련 지원금 우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음(제4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일하는 사람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제5항)	재량규정 재량규정 재량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25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으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음(제2항) 1. 노무제공계약의 체결에 관한 분쟁 2.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 등의 지급에 관한 분쟁 3. 노무제공계약 내용의 변경·추가,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분쟁 4. 노무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또는 손해의 부담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재량규정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려는 경우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분쟁 당사자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를 작성해야 함(제3항)	의무규정
		제3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제4항)	의무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분쟁조정 절차방법, 조정조서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정하는 규칙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13	안 제26조(분쟁조정 등을 위한 지원)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협의, 조정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는 사업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됨(제3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27조(경력 관리 지원 등)	국가는 일하는 사람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제1항) 1. 일하는 사람의 근무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기록 접수 및 증명서 발급 2. 일하는 사람의 경력정보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3.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경력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경력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국가는 일하는 사람에 대한 경력관리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경력관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15	안 제28조(공제 회의 설립 및 지원)	일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음(제1항) 1. 일하는 사람 구성원 간 상호부조 2.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지원	재량규정
		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하며, 공제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해서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는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제회의 인가 요건 및 절차, 공제사업의 운영 및 감독, 비용의 지원기준과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29조(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제2항) 1. 일하는 사람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2. 일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및 생활 안정 지원 3. 일하는 사람의 성희롱·괴롭힘과 관련된 법률적 구제 절차 및 상담·협의 등 지원 4.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상담·협의·조정 등 지원 6. 일하는 사람의 이해 대변 및 소통 활성화 7. 일하는 사람 공제회 사업 운영의 지원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의무규정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3항)	의무규정
		재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제4항)	의무규정
		재단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 또는 위탁을 통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6항)	
		국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제7항)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음(제8항)	
		그 밖에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9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7	안 제30조(행정지도)	고용노동부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도를 할 수 있음(제1항) 1. 이 법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권고 2. 노무제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조언 3.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 4. 그 밖에 일하는 사람의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권력적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18	안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19	안 제3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각종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경력관리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함(제2항)	의무규정
20	안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1	안 제34조(과태료)	제17조를 위반하여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항)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명시한 선언적 규정으로 추계대상에서 제외
2	안 제8조(인격적 대우 및 휴식권의 보장)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일하는 사람에 대한 성희롱·괴롭힘과 관련하여 상담·협의·조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시행할 성희롱·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일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방안의 내용과 상담·협의·조정 등과 관련한 신규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3	안 제9조(안전과 건강의 보호)	—	• 미대상(제1항 및 제2항) — 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이 일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 미첨부(제3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하는 사람 이나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 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장 래에 시행할 사업의 시행 여부와 규모 및 내용에 대한 정보 가 필요하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 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안 제13조(분쟁 조정 신청) 안 제25조(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사업자가 계약 체결 규정 및 계약의 변경 또는 해 지의 제한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일하는 사람은 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13조), 일 하는 사람의 노무제공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동위 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 으므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으로 인해 추 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 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의 규모와 계약 체결 규정 및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제한 규정 등으로 인한 분쟁 발생 건수 및 이에 대한 분쟁 조 정 신청 건수, 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 등을 검토하여 야 하나, 현시점에서 추계에 필요한 다양한 변수를 합리적 으로 검토하기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의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 -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앙노동위원회에는 총 7개의 분과위 원회(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 위원회, 중재위원회,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공무원노동 관계조정위원회)가 있음 [표 2] 중앙노동위원회 예결산 현황(지노위 포함) (단위: 백만원)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4">예산액</th><th colspan="4">집행액</th></tr><tr><th>합 계</th><th>회의경비</th><th>사무처리 경비</th><th>사업경비</th><th>합 계</th><th>회의경비</th><th>사무처리 경비</th><th>사업경비</th></tr><tr><td>2022년</td><td>44,341</td><td>5,091</td><td>30,029</td><td>9,221</td><td>42,654</td><td>5,090</td><td>29,334</td><td>8,230</td></tr><tr><td>2023년</td><td>44,881</td><td>5,530</td><td>30,843</td><td>8,508</td><td>45,090</td><td>5,884</td><td>30,453</td><td>8,753</td></tr><tr><td>2024년</td><td>46,693</td><td>6,256</td><td>32,007</td><td>8,430</td><td>47,762</td><td>6,648</td><td>32,414</td><td>8,700</td></tr><tr><td>2025년</td><td>53,974</td><td>6,256</td><td>33,156</td><td>14,562</td><td>—</td><td>—</td><td>—</td><td>—</td></tr></tabl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관 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 2025.12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리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리 경비	사업경비	2022년	44,341	5,091	30,029	9,221	42,654	5,090	29,334	8,230	2023년	44,881	5,530	30,843	8,508	45,090	5,884	30,453	8,753	2024년	46,693	6,256	32,007	8,430	47,762	6,648	32,414	8,700	2025년	53,974	6,256	33,156	14,562	—	—	—	—
구분	예산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리 경비	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	사무처리 경비	사업경비																																																
2022년	44,341	5,091	30,029	9,221	42,654	5,090	29,334	8,230																																																
2023년	44,881	5,530	30,843	8,508	45,090	5,884	30,453	8,753																																																
2024년	46,693	6,256	32,007	8,430	47,762	6,648	32,414	8,700																																																
2025년	53,974	6,256	33,156	14,562	—	—	—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5	안 제14조(사회 보험 등)	—	• 미대상 – 제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회 보험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제도와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이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안 제19조(지원 계획의 수립 등)	○	• 공식추계 – 유사 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 산출
7	안 제20조(실태 조사)		
8	안 제21조(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		
9	안 제22조(복지 증진)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휴게시설·쉼터 설치 및 복지 물품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에 따른 사업의 시행 여부와 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0	안 제23조(권익 보호)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일하는 여건 개선 및 이해 대변 등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에 따른 사업의 시행 여부와 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24조(표준 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	- 공식추계(제1항)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 미대상(제2항)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	- 미첨부(제3항 및 제4항)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조달 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 관련 지원금 우대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표준계약서의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입찰 시 가점 부여, 고용 관련 지원금 우대 등 장래에 발생할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부와 내용 및 방법 등과 교육·상담·홍보 등의 사업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미대상(제5항) -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은 일하는 사람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2	안 제26조(분쟁 조정 등을 위한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노무제공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상담, 협의, 조정 등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규사업의 시행 여부 및 내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3	안 제27조(경력관리 지원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경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근무처, 경력, 자격 등에 관한 기록 접수 및 증명서 발급, 일하는 사람의 경력정보를 기록·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 시행 여부와 이에 대한 지원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4	안 제28조(공제회의 설립 및 지원)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 또는 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일하는 사람 구성원 간 상호부조 및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지원 중 어느 하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공제회의 설립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 재정의 추가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공제회의 설립 여부와 공제사업의 내용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 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15	안 제29조(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 설립 등)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고, 국가로 하여금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재단의 설립 규모와 운영비 규모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여부와 규모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장래에 발생할 추가재정소요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16	안 제30조(행정지도)	—	• 미대상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이 법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권고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고용노동부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7	안 제31조(조례의 제정)	—	• 미대상 - 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하는 사람과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8	안 제3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	• 미대상 -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의 지원과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이행 가능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19	안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	• 미첨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업무 위탁 대가는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현재 해당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 비용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20	안 제34조(과태료)	—	• 미대상 -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 수입의 순증가액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¹⁾에 따른 비용추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19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일하는 사람 지원과 보호를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발의·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 본 추계서는 지원계획을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립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산하며, 수립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산출
 - 이때, 용역단가는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정책연구용역의 평균값(3,300만원)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지원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원계획의 수립 등(안 제19조)	33	33	33	33	33	167	33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실태조사(안 제20조)

□ 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현황, 일하는 환경 및 처우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시행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기 어려우나, 본 추계서는 유사사례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제정안은 실태조사의 주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매년 실시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산출

* (실태조사 1) 임금실태 등 조사

- (용역예산) 2억원(2024년)
- (주요내용) 「최저임금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부(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청(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등의 자료를 가공·분석하여 근로자의 임금 등을 조사
- (발주기관)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²⁾

2) 자료: 고용노동부

* (실태조사 2) 노무제공자근로실태조사

- (용역예산) 8,000만원(2024년)
- (주요내용) 노무제공자의 근로실태를 살펴보고,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에 대한 노무제공자와 사업주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 (발주기관) 국민연금공단
- (수행기관) 케이스탯컨설팅

[표 4] 실태조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실태조사(안 제20조)	140	140	140	140	140	700	14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안 제21조)

□ 제정안은 일하는 사람의 지원·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제정안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장래에 설치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에 대해 검토하기 어려움

- 다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유사사례(고용정책심의회)를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민간위원 수) 2025년 기준 고용정책심의회의의 사례를 토대로 20인으로 가정

○ (회의개최 횟수) 분기별로 연 4회 개최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참석 사례금) 안건 검토비 등을 포함한 회의참석 사례금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³⁾

- 이때, 회의참석 사례금은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3)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5.5.p.222.)

[표 5]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 설치에 따른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20	20	20	20	20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회의참석사례금(C, 만원/명·회)	20	20	20	20	20	—
소계(D=A×B×C, 백만원)	16	16	16	16	16	80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결과는 향후 실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규모, 민간위원의 수 및 회의개최 횟수 등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안 제24조제1항)

□ 제정안은 국가로 하여금 노무제공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는 가정을 토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

－ 표준계약서 관련 연구용역 평균금액 6,600만원/건

[표 6] 표준계약서의 제정 관련 용역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수행기관	연도	금액
2026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6	66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5	66
2024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4	66
2023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3	66
2022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공정거래위원회	2022	66
평균			66

자료: 나라장터, 2026년 4월 15일 접속

[표 7]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비용추계(추정치):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안 제24조제1항)	66	66	66	66	66	330

주: 1.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추계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하며,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 위원회를 두고, 노무제공계약의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표 8]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안 제19조)	33	33	33	33	33	167	33
실태조사 (안 제20조)	140	140	140	140	140	700	140
일하는 사람 정책심의위원회 (안 제21조)	16	16	16	16	16	80	16
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 등 (안 제24조제1항)	66	66	66	66	66	330	66

주: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한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 결과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사업의 추진 내용 등에 따라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